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5. 1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5월 8일, 차재홍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5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2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5월 15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백남환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추가로 내용을 신설하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횟수에 제한을 둠 (안 제4조)
- 공사, 물품의 제조, 용역계약 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 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조세감면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안 제15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동(同) 조례안은 2017.5.10.~5.1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회의 연임횟수 제한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선구매와 조세감면 등임
-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지원책을 추가 및 개선하는 일부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생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요구를 살펴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